

# 2017년 하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문내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도폐지 공유재산 무상양도 관련 법률 자문	
	2	교육공무원 징계 사유 관련 법률 자문	
	3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관련 법률 자문	
	4	학교법인의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규칙 효력 유무 관련 법률 자문	
	5	매매대금에서 재산세 등 세금 납부 가능 여부 관련 법률 자문	
	6	사립유치원 만기환급형 보험처리 관련 법률 자문	
	7	소유권 및 명도 관련 법률 자문	
	8	사립학교 징계취소에 따른 소급 인건비 지원 관련 법률 자문	
	9	개발사업 협의업무 처리 관련 법률 자문	
	1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보조금 환수처리 가능 여부 관련 법률 자문	
	11	학원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항고 여부 관련 법률 자문	
	12	용역근로자 감원 관련 법률 자문	

	13	학교 시설공사(건물증축) 추진 관련 법률 자문	
	14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15	급식업체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관련 법률 자문	
	16	보직교사 임명취소와 관련 법률 자문	
	17	명도소송 관련 법률 자문	
	18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관련 법률 자문	
	19	시설공사(건물증축) 부지내 폐기물 발견 관련 법률 자문	
	20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사무처리와 관련 법률 자문	
	21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법률 자문	
	22	총동창회 동창회비 통장 보관 관련 법률 자문	
	23	구 육성회직원 관련 법률 자문	
	24	채권양도통지와 관련 법률 자문	
<b>총계</b>			<b>24건</b>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 법 률 자 문 결 과 보 고 서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용도폐지 공유재산 무상양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우리청 소관 용도폐지되는 공유재산 토지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무상양도를 요청하였으나, 유상매각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을 배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을 적용하여 무상양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양도 되어야 하므로 유상매각 불가함. <input type="checkbo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무상양도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양도 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강행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무상양도 거부 불가함. <input type="checkbox"/> 강행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은 문언상 재량규정이므로 무상양도 거부 불가함.
2	교육공무원 징계사유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생 체벌로 징계 처분 이력이 있는 교사의 징계처분 사유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 중 상습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나, 상습폭행에는 해당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나, 상습성을 인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나, 상습폭행 해당여부는 당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나, 상습폭행에는 해당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폭행 사건 이전의 학생 체벌을 포함하여 상습폭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소급금지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으므로 상습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움.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의 SNS 댓글과 관련하여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 헌법이 정한 자유 침해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의 한계에 관한 질의)	<input type="checkbox"/> 답변1 -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여부: 위반 아님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위반 아님 - 본 사안으로 징계 시 헌법상 자유 침해 여부: 침해소지 있음 - 정치 운동 금지의 상시 여부: 상시 아님  <input type="checkbox"/> 답변2 -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여부: 위반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위반 - 본 사안으로 징계 시 헌법상 자유 침해 여부: 침해 아님 - 정치 운동 금지의 상시 여부: 상시금지  <input type="checkbox"/> 답변3 -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여부: 위반 아님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위반 아님 - 본 사안으로 징계 시 헌법상 자유 침해 여부 : 개인적인 의사표현 - 정치 운동 금지의 상시 여부: 정치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답변4 -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여부: 위반 아님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지속적인 표현으로 위반임 - 본 사안으로 징계 시 헌법상 자유 침해 여부: 징계대상이 됨 - 정치 운동 금지의 상시 여부: 상시금지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4	학교법인의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규칙 효력 유무 관련 법률 자문	□ 학교법인의 ‘교원임용후보자선정규칙’ 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만일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해당 규칙의 효력 유무	□ 상위법령에서 공개전형원칙에 대한 예외에 관한 별도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위 선정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위 선정규칙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위 규칙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사료됨.
			□ 위 선정규칙은 비공개 예외 사유를 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해당 규칙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임.
			□ 위 선정규칙은 사립학교법상의 공개채용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임.
5	매매대금에서 재산세 등 세금 납부 가능 여부 관련 법률 자문	□ 매매대금(학교 이전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이 채권추심에 의해 세금으로 납부되었는바, 매매대금에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대금과 세금 납부는 별개이며, 학교법인이 매매대금에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법인의 보전계획 제출이 필수적임.
			□ 재산세는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국세 우선 납부의 원칙에 따라 채권추심은 정당함. 매매대금이 학교법인 소유 재산으로 세금 납부는 가능하나 단, 보전계획 관리는 필수적임.
6	사립유치원 만기 환급형 보험 처리 관련 법률 자문	□ 행정지도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한 교육경비의 변칙 적립을 해소하고자, 행정지도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한 해지 및 손실금 보전 가능여부	□ 행정지도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률 위반사항은 반복해서 시정이 가능함. 행정지도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로 확대 해석되기는 어려우며, 단계적 행정지도 강화에 불과함.
			□ 법률 위반사항은 시정이 원칙이며, 소급적용이 가능함. 손실금 보전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분쟁이 가능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7	소유권 및 명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위치 변경 인가일 이전 학교법인에서 매매대금 전액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이전사업 완료 후 권리를 행사한다는 조건의 별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기본재산 처분 허가 조건 및 「사립학교법」 제12조 제3항 위반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위법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 현재 멸실등기 및 민간시설 사업 미 추진 중으로 허가조건 위반이 아니며,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 반환 청구가 불가함. 임원 취임 승인취소 요건은 아니며 민간사업 추진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 시 각하 가능성이 높음. <input type="checkbox"/>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하며, 처분허가에는 매도, 증여, 담보 등이 다 포함됨. 소유권 이전과 명도는 별개이며, 소유권은 이전되어도 명도일에 대한 확약서 징구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없으며, 근저당이 설정되었어도 학교 이전 전 이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 위반이 아님. 고발 조치 시 오히려 공사 지연 사유만 발생하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명도일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아님. 교육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소유권 제한을 허가한 사항이 아니며, 임원 취임 승인취소 요건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어 고발 조치가 의문이 됨.
8	사립학교 징계 취소에 따른 소급 인건비 지원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을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43조 위반 여부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이지만 기속재량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내부지침 마련 시, 재정결함보조 미지원은 책임경중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 권장함.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또는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재정결함보조 미지원 근거 지침이 가능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9	개발사업 협의업무 처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에서 개발사업조합의 기부채납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교육청에서 조합의 요청대로 기부채납금액 감조정을 협의하거나, 학교신설 미추진시 조합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인천광역시이고, 교육청은 단지 협의권자에 불과한 바, 교육청에서 기부채납 이행 강제 및 특혜 부여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1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보조금 환수처리 가능 여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보조금을 수령하여 학교예술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혼용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으로 환수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급식 보조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보조금 환수는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지방보조금 ‘용도 외 집행’ 으로 보이므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당초 교부한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input type="checkbox"/> 지방보조금 용도 외 집행으로 해당 기간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지방보조금 용도 외 집행으로 해당 기간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학원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항고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원 등록말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	<input type="checkbox"/>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 받아들여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를 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2	용역근로자 감원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직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용역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	<input type="checkbox"/>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저촉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감축대상자가 이의 및 정식 민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처방안	<input type="checkbox"/> 감축대상자가 이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불가피한 기관 사정을 잘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처 가능
		<input type="checkbox"/>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안내를 하여야 하는 바, 용역업체와 기관 중 대상 근로자에게 안내해야할 주체	<input type="checkbox"/> 계약종료는 해고라 할 수 없으며, 용역업체가 대상 근로자에게 재계약불가 안내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감축 대상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사유로 기존과 같은 인원으로 공고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은 인원을 공고 요구할 수 없음.
13	학교 시설공사 (건물중축) 추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사업추진법」 제5조의2 제1항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건축법」 제11조와 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을 감독청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로 신고하는 외에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창구를 관할 감독청으로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의 요건은 갖추 필요가 없다고 해석됨.(건축허가 신고 절차 관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3	학교 시설공사 (건물중축) 추진 관련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건축법」 제11조와 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관련 인·허가의 ‘건축허가’ 의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건축법」 제11조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 조항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건축허가 의제’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건축법」에 대해 법체계상 우선적용이 가능한 법인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을 감독청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로 신고하는 외에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창구를 관할 감독청으로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을 배제 하려는 것은 아님.</p> <p><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의 요건은 갖추 필요 없다고 해석됨.(건축허가 신고 절차 관련)</p> <p><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에 의제 조항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사업 승인 시 「건축법」요건을 갖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제11조제11항 “해당 대지의 소유권확보” 조항과 관련한 특례 규정은 없으므로 「건축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법체계상 「건축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건축법」상의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이라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건축법」 사이에는 우선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한 결과 「건축법」에 우선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일 뿐임.</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4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무처리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3 (직위해제)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으로 적용 가능 및 타당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교육공무원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지 또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반복적·누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 사유는 되지 아니함. <input type="checkbox"/> 본 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성실의무와 교직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직위해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15	급식업체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급식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급식물품을 납품 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근거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였으나,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업체에서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데 정당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는 급식업체의 계약상 납품 의무 불이행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적법한 조치임. <input type="checkbox"/>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효력은 소급효가 없고,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점,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 이후에 영업정지가 처분 효력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세입 조치는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는 계약이행 불가에 따른 계약해지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할 수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6	보직교사 임명취소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자체 보직교사 정원을 초과하여 임명하였는데, 부장 보직 발령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교직수당가산금 회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직교사 임명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그 취소로 인하여 받은 상대방 교사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용 취소 및 수당 회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부장보직 발령이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직의 지위에서 사실상 제공해 온 업무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보직발령을 취소하더라도 수당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수령했던 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부장보직 발령을 취소하고, 그 동안 부장보직에 따라 수령했던 교직수당가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7	명도소송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강제집행불능처리에 대한 후속 법적 조치 <input type="checkbox"/> 강제집행불능처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형사고발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단점유에 따른 형사고발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승계집행신청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형사고발은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퇴거불응에 따른 형사고발은 가능함.
18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연락두절인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전에 반드시 신청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채권자가 신청 전에 채무자에게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신청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신청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인지시킬 필요 없음. 미리 인지시키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송달해보고 송달이 안 되면 공시 송달을 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면 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9	시설공사(건물증축) 부지내 폐기물 발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매매계약 및 학교증축공사 시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16년 후 강당증축공사 시 매립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최초 매매계약 시 특약조건(학교증축공사 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처리)을 적용하여 이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 당시에는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16년 후 폐기물이 발견되었지만 매매계약 특약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매도인이 폐기물 처리 요구에 불응할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 및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0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A유치원이 개원하여 휴원하다가 모집원아가 없어서 폐원 인가를 받음. 매수인은 A유치원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B유치원을 설립신청을 하였는데 폐원인가를 받기 전으로 A유치원의 폐원인가일 전에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매매한 것이 새로 설립신청한 B유치원의 설립인가를 거부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매매계약 체결일은 폐원인가 이전이나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폐원인가 이후이므로,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거부할 사유로 보기 어려움.(인가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새로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관련법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다면,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함.(인가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새로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관련법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다면,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함.(인가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폐원인가일 이전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무효인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설립인가 거부사유에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폐원인가를 받기 전에 토지와 건물을 매매한 것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인가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1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가능여부 및 공무상 과실로 인한 대물배상 처리 방법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수목철거 강제집행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며, 공무상 과실로 인한 대물배상 처리는 손해배상으로 하면 됨.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수목철거는 강제집행으로 가능함.
22	총동창회 동창회비 통장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에서 총동창회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학교가 관리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 및 총동창회장에게 통장을 인계하거나 발전기금으로 기탁 받을 경우 문제 소지 여부 및 총동창회원 및 회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학교 처리 방안	<input type="checkbox"/> 총동창회장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동창회장 명의의 동창회비 관련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무상임치에 해당하고 통장 및 도장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음. 언제든지 통장회장과 사이의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학교가 통장을 보관하게 된 계기, 즉 약정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학교에 통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의무 자체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동창생(구성원)의 약정으로 통장을 인계하여야 하며, 통장의 처분 방안은 총동창회(또는 구성원들)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인계하는 등 사적 자치에 따라 규율 될 문제이지 법률에서 정한 처리절차가 있지 않음.
23	구 육성회직원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호봉승급제한이 된 구 육성회직원(고용2종)의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하여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연1회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고용2종 직급이 폐지되어 별도의 보수표를 작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은 구 육성회직원에게 지급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불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에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련 근무 평정결과에 따라 연 1회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input type="checkbox"/> 호봉승급제한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매년 정기 호봉승급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에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련 근무 평정결과에 따라 연 1회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같은 조건의 근로자는 승급제한 없이 매년 승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승급제한을 할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효력 자체가 의문인 점 등 정기 호봉승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에 구 육성회직원의 14호봉 이상의 호봉승급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불가함.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에 구 육성회직원의 14호봉 이상의 호봉승급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불가함.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에 구 육성회직원의 14호봉 이상의 호봉승급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불가함. <input type="checkbox"/> 다른 학교의 경우 승급제한없이 매년 호봉승급하는 것을 볼 때 취업규칙상 호봉승급 제한을 없애야 하며, 취업규칙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4	채권양도통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통지서를 근거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금액이 지급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업체인 채권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양도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업체인 채권양도인에게 지급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채권양수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에 따른 금액을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부분은 법적 분쟁과 관련 없는 부분임. <input type="checkbox"/> 양도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자는 계약업체인 채권양도인임.